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8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6.

발 의 자 : 박충권 · 서천호 · 김정재
김성원 · 김태호 · 박준태
엄태영 · 신성범 · 박성훈
백종헌 · 조지연 · 서일준
조은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공제사업과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실시 기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 특히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의 경우 별도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

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
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및 제36조).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

제36조제1항제5호의2 중 “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”을 “교육시설안전사고(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,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전문기관의 지정) ① 교육 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 ·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33조(전문기관의 지정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제34조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안전원의 사업) ① 안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5. (생략) 5의2. <u>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 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</u>	제36조(안전원의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<u>교육시설안전사고(교육기 관 내에서 발생하는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 고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로 정신적 피해를 입 은 학생,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-----</u> -----

6. ~ 16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 6. ~ 1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